

Original Article / 원저

##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방안 설문조사 연구

정우성<sup>1</sup>, 신우철<sup>1</sup>, 홍익환<sup>1</sup>, 최정욱<sup>1</sup>, 김윤경<sup>1,2\*</sup>

<sup>1</sup>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sup>2</sup>원광한약연구소

### A survey on additional needs for herbal preparation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o Sung Jeong<sup>1</sup>, Woo Cheol Shin<sup>1</sup>, Ik Hwan Hong<sup>1</sup>, Jung Uk Choi<sup>1</sup>, Yun-Kyung Kim<sup>1,2\*</sup>

<sup>1</sup>Department of Korean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sup>2</sup>Wonkwang Orient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Objectives** :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insurance covered herbal medicin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 prescription lists of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 Previous research and discussions have been summarized, the cases of overseas insurance prescrip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insurance prescription of Korea. We conducted two questionnaire surveys. From the first email questionnaire survey, response rate was very low. So once again, from december 4, 2014 to december 17, we emailed a questionnaire survey to 17,275 members of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890 peoples(5.1%) responded for two weeks. We analyzed prescriptions from previous studies, overseas cases, and surveys.

**Results** : With overseas herbal medicine health insurance lists, prescriptions recommended by the experts committee, the prescriptions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and the prescription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 compared and analyzed all the results and we derived 202 prescriptions for NHIS.

**Conclusion**: We suggest 127 Single extracts and 202 prescriptions to be added for NHI.

**Key words** : herbal preparation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questionnaire, priority.

## I. 서론

건강보험제도<sup>1)</sup>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의료비용 자부담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약제제는 건강보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다. 한방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1987년 26개 기준처방, 68종 단미 엑스산제로 시작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후 지금까지 급여범위와 기존 56개 기준처방의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처방의 수는 우리나라 방제학교과서 381종 처방의 14%이며 단미 엑스산제 69종은 본초학 408종 약제의 16.6%로 너무 미미하다.<sup>2)</sup> 국내 약전 및 규격집에 수록된 총 품목 수 857품목 중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121품목으로 14%에 불과하며 허가품목 6261품목 중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19%에 불과하다.

부산대학교에서 실제 임상에서 처방된 처방 Database와 보험이 적용되는 56개 단미 혼합 엑스제를 비교한 결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의 3년간 29,404건의 처방 사용 건 중 985건(약 3.3%)만이 56종 보험처방과 유사한 처방이 사용되어 보험처방은 실제 임상사용 처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sup>3)</sup>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148처방<sup>4)</sup>과 2013년 한약제제 급여총액 1556억엔(한화 1조 5449억원), 중국의 987처방과 2013년 중국시장 내 중성약 한약제제 5242억위안(한화 90조 7993억원), 대만 307여종 복합제 및 500여종 단미제와 2013년 총생산액 63.4억 대만달러(한화 2724억원)으로 단순 처방수와 시장규모 비교만으로도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56개 처방수와 보험급여 범위가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sup>5)</sup>

현재 출시되고 있는 한약제제 제품 중 단미 엑스제

는 13개회사에서 678품목, 혼합 엑스제는 11개 회사에서 531품목을 생산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2014년 한방 의료기관 급여제현황을 보면 한방 의료기관에서 보험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은 五積散으로 72억 654만원이 사용되어 전체 한방약제비 338억 중 21.3%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처방된 상위 10개 처방은 九味羌活湯, 芎夏湯, 小青龍湯, 二陳湯, 蔘蘇飲, 補中益氣湯, 香砂平胃散, 蓮翹敗毒散, 平胃散 순이며 상위 10개 처방의 보험청구액 총합이 190억 원으로 전체 한방 약제비 330억 원 중 5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7)</sup> 2016년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약 316억원으로 56개 기준처방 중 상위 19개 처방이 전체 청구금액의 90%를 차지한다.

보험한약제제의 사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보험한약제제의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처방과 단미제가 제한적어서 사용이 소수의 처방에 편중되고 있다.<sup>8)</sup>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3조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58조원 대비 3.9%이며, 전체 약품비 13조 4491억 원 중 한방 약품비는 285억 원으로 전체 약품비에서 겨우 0.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 초기에는 전체 진료비 618억 원 중 171억 원으로 전체 한방 진료비에서 27.1%를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전체진료비의 1%에 불과하였다. 2011년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으로 다소 증가하여 2013년 전체진료비의 약 1.68%를 차지하였다.<sup>9)</sup> 2015년 한방약품비가 한방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양방 24% 대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sup>10)</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의 한약제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험급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와 수요조사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처방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처방, 해외 보험사례,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56개 처방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 및 제시하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Yun-Kyung Kim, Department of Korean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llabuk-do, 54538, Republic of Korea.

Tel : +82-63-850-6803, Fax : +82-63-850-6803, E-mail : hestia@wku.ac.kr

• Received : Aug 12, 2017 / Revised : Aug 23, 2017 / Accepted : Aug 28, 2017



## II. 본론

### 1. 연구대상 및 방법

대체가능한 기준처방 도출을 위하여 한의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주로 치료하는 질병과 처방을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명부에 등록된 18,973명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2주간 응답자 수가 71여명으로 응답율이 저조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문항을 주관식이 아닌 선택형으로 변경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간 한의사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한의사협회원 17,275명 중 메일 주소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안내를 이메일로 보내 실시하였다. 2차에는 총 890명이 답하였으며 응답율은 5.1%였다.

### 2.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방안 위한 선행연구

그동안 급여대상처방에 대한 한의사들의 확대요구로 8건 정도의 연구가 있었다. 1996년 처음으로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한방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재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조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105개 처방<sup>11)</sup>을 도출하였는데,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준처방에서 제외되어있는 상위 처방 16종은 藿香正氣散, 當歸鬚散, 牛黃清心丸, 烏藥順氣散, 桂枝茯苓丸, 香砂六君子湯, 溫經湯, 五苓散, 祛風至寶丹, 清心蓮子飲, 托裡消毒飲, 六味地黃湯, 防風通聖散, 牛黃抱龍丸, 蘇合香圓, 天王補心丹이었고, 상비용 한약제제 15종에는 通關散, 紫金錠, 黑錫丹, 保命散, 救命散, 乳香散등이었고 합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순 기본 처방 31종은 四物湯, 四君子湯, 二陳湯, 桂枝湯, 麻黃湯, 芍藥甘草湯, 五苓散, 牽正散, 白虎湯, 小承氣湯, 眞武湯, 四逆散, 附子理中湯, 梔豉湯, 理陰煎, 生脈散, 黃連解毒湯, 桃仁承氣湯, 益元散, 當歸補血湯, 平胃散, 香蘇散 등 이었다. 그 외 사상의학 처방 43종도 제시되었다.

그 후 98년 한의사협회, 03년 국립의료원 등에서 보험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003년 복합제제 및 환제, 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국립의료원, 2003)<sup>12)</sup>에서 한의사,

제약회사 대상으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처방은 총 51개로 그 중 '사상처방' 23개, 기존 급여대상 1개를 제외한 상위처방은 牛黃清心元, 當歸鬚散, 牛黃抱龍丸, 藿香正氣散, 蘇合元, 防風通聖散, 歸脾湯, 雙和湯, 六味丸, 烏藥順氣散, 奇應丸, 天王補心丸, 溫膽湯, 八味元, 分心氣飲, 熱多寒少湯, 涼膈散火湯, 征露丸, 托裡消毒飲, 五苓散, 葛根解肌湯 등 이었다.

이후 2008년도에 한국한의학연구원 박<sup>13)</sup> 등이 한방병원 64개소와 한의원 4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기관 보유 한약제제 연구』에서는 한의원에서 보유한 비급여 한약제제 중 상위 순으로 當歸鬚散, 藿香正氣散, 五苓散, 防風通聖散, 麥門冬湯이었다. 그 외 六味地黃湯, 桂枝茯苓丸, 芍藥甘草湯, 酸棗仁湯, 烏藥順氣散, 雙和湯, 清心蓮子飲, 荊防敗毒散, 葛根湯, 加川芎辛夷, 銀翹散, 加味歸脾湯, 牛黃清心元 등이 있다. 자가조제 한약제제 중 상위 순으로는 拱辰丹, 消滯丸, 桂枝茯苓丸, 靈神丸, 八味丸 이었다.

2009년 한의사 협회는 한의원 처방 선호도에 대한 기존연구결과(2003년 국립의료원 27개, 1998년 대한한의학협회 65개)와 사상체질 의학회 의견(24개)을 반영하여 임상에서 필수적으로 多用되는 기준처방을 파악하여 그중 방제학회 의견을 고려하여 10개 기준처방은 제외하고 총 106개 기준처방 급여확대를 요구하였고 상기 필수 기준처방 106종의 원전 및 구성 약재를 조사한 후, 현행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69종을 제외하고, 추가 급여 확대가 필요한 단미제 131종<sup>14)</sup>을 건의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과제로 진행한 2014년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의 설문조사 부분을 다룬 것이다. 이후 2015년 한약진흥재단에서는 한의학적정책연구원의 연구로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여 기준처방의 1~3순위를 정한 바 있다.

### 3. 해외의 한약제제 의료보험급여 제제 다빈도 목록

한약제제를 보험적용하고 있는 인근 동아시아 3국의 다빈도 처방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중국의 경우 人民社會保障局이 2009년 처음 발표한, 기본의료보험이 적용되는 『國家基本醫療保險藥品目錄』(이하, 『약품목록』)은 매년 수정안이 발표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보장행정관리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약품목록』을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한다.<sup>16)</sup>

『약품목록』은 서의약, 중성약, 중약음편으로 구성되며, 2015년 수정판 목록에는 기본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서의약 1140종과 중성약 987종, 민족약품 45종이 포함되어 있다.

『약품목록』에 기재된 서의약, 중성약은 甲類, 乙類로 분류된다. 甲類는 治療에 상용하는 기본적인 약물로 전부 보험처리가 되는 분류이다. 乙類는 환자본인이 치료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분류이다. 甲類약품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乙類약품은 각 성, 구, 시에서 15%의 조

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乙類약품의 구체적인 가격표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甲類약품보다 비싸고 보험적용 비율도 낮다. 甲乙 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민족약을 제외한 중성약 987종 가운데 甲類약이 154종, 乙類약이 833종이다. 중약음편은 『중국약진』을 기반으로, 고가의 약제, 남용 우려, 혹은 식품으로 사용되는 약제로 단일약품 처방 시 보험처리 되지 않는 약제 99종, 단방 및 복방 모두 보험처리 되지 않는 약제 28종 및 1개 류를 포함하여 총 127종 1개 류를 제외한 IV 『중국약진』의 모든 중약제가 보험처리 된다.

**Table 1.** Frequently Used Prescriptions in Medical Insurance System of Japan, China and Taiwan

Ranking	Japan (2012年)	Applied	China (北京市海澱區萬壽路社區, 2010-2011年)	Applied	Taiwan (2009年)	Applied
1	Daegeonjungtang		Bokbangdansamjeokwan	○	Gamisoyosan	Existing
2	Bojungikgitang	Existing	Noesimtonggyonang		Dokhwalgisaengtang	○
3	Yukgunjatang	○	Eunhaengyeoppyeon		Yungmijihwanghwan	○
4	Eokgansan	○	Pyeonsingwarip		Bojungikgitang	Existing
5	Gamisoyosan	Existing	Sahyangjanggolgo		Sosihotang	Existing
6	Siryeontang		Hwalhyeoljitonggo		Yongdamsagantang	○
7	Jagyakgamchotang	○	Seollyeonggolbogyonang		Sogyeonghwalhyeoltang	○
8	Maengmundongtang	○	Sahyangbosimhwan		Cheongungdajosan	
9	Socheongnyongtang	Existing	Uhwangcheongsimhwan		Hyangsayukgunjatang	
10	Uchasingihwan		Hyeoljeonsimmaengnyeongpyeon		Socheongnyongtang	Existing
11	Bangpungtongseongsan	○	Jinjumyeongmokjeoganaek		Galgeuntang	Existing
12	Galgeuntang	Existing	Sokyogusimhwan		Banhasasintang	Existing
13	Danggwijagyaksan	○	Songnyeonghyeolmaekganggyonang		Sinicheongpyetang	
14	Oryeongsan	○	Goltongcheopgo		Mahaenggamseoktang	○
15	Palmijihwanghwan	○	Yanghyeolcheongnoegwarip		Sinisan	
16	Gyejibongnyeonghwan	○	Yungmijihwanghwan	○	Gamnoeum	
17	Sipjeondaebotang		Bokbangseonjungnyeogaek		Sanggugeum	
18	Bangjihwanggitang	○	Eunhwangwarip		Gyejibongnyeonghwan	○
19	Jeoryeontang		Geumcheongyeokgyonang		Jagyakgamchotang	○
20	Sosihotang	Existing	Cheondantongnakgyonang		Gwibitang	○
21					Jibaekjihwanghwan	
22					Hyeolbucheugeotang	○
23					Pyeongwisan	Existing
24					Changisan	
25					Danggwijagyaktang	○
26					Cheonwangbosimdan	○
27					Eungyosan	○
28					Gigukjihwanghwan	○
29					Maengmundongtang	○
30					Gwakyangjeonggisan	○



2010-2011년의 北京市 海澱區 萬壽路 社區의 다빈도 보험제제 목록을 입수하여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2차 설문조사용 60개 처방목록에 해외 다빈도 보험제제중 표 1에 표시된 것들을 반영하였다. 중국은 1위인 複方丹蔘滴丸이 心適丸으로 국내 유통되므로 이를 반영하였고, 중국처방이 대부분 문헌에 기재된 원방이 아니라 신규개발된 것이므로 국내 실정과 는 달라 六味地黃湯 외에는 제외하였다.

일본의 경우 大建中湯, 柴苓湯, 牛車腎氣丸, 十全大補湯, 豬苓湯은 반영하지 않았다. 十全大補湯은 현재 八物湯이 있고 雙和湯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제외했으며 牛車腎氣丸은 더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八味地黃丸을 반영하였다. 五苓散을 반영하였으므로 柴苓湯과 豬苓湯은 제외하였다.

대만의 경우 중의사가 처방하는 엑스과립제가 모두 보험적용이 되며 표 1은 2009년 다빈도 처방 순위인데 香砂六君子湯은 六君子湯을 대신 반영하였고 辛夷清肺湯, 辛夷散, 蒼耳散, 桑菊飲은 국내 감기 다빈도 처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川芎茶調散 또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처방이므로 제외하였다. 銀翹散과 血府逐瘀湯은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반영하였다.

#### 4. 설문조사결과

##### 4-1. 1차 설문조사 결과

설문응답 인원은 71명의 한의사였고 30대가 42.3% 40대가 39.4%로 나타났다. 근무지는 한의원 74.6% 한방병원이 11.3%였고, '보험 한약제제를 사용해본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98.6%가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6개월간의 보험 한약제제 1개월 사용량은 71명 중 7명을 제외한 64명이 답변하였으며 금액은 평균 98.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56개 처방 중에서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5가지 처방의 순위에 대한 서술형 답에는 五積散, 小青龍湯, 香砂平胃散, 蔘蘇飲, 九味羌活湯이 상위로 나타났다.

##### 4-2.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른 추천 처방

1차 설문조사 응답율이 저조함에 따라 1차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내용과 기존연구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삭제 및 추가대상 처방 목록을 전문가 회의에서 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여 객관식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방제학회 하계 이사회에서 추

천된 전문가들<sup>17)</sup>로 구성하여 회의를 거쳐 실제 임상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감기 및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통증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과 임의처방에서 도출된 처방, 주요상병에 대한 처방, 가감이 가능한 다양한 단미 제제의 배합으로 보다 다양한 처방조합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을 도출하였다(2차 설문조사 문항 참고).

기존 연구에서 추천된 136개 처방 중 33개 처방을 선정하고 기타 1차 진료에 필요한 처방과 외국 다빈도 보험제제, 한의사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처방 60종을 선정하였다.<sup>18)</sup> 선정된 60개 처방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되기를 원하는 처방을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 4-3. 2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30, 40대가 72.8%를 차지하였고, 한의원 근무자가 76.1%로 대다수였다. 근무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44.9%였으며 부산, 대구, 울산, 경상이 22.4%였다.

- ① '보험 한약제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2.4%<sup>19)</sup>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보험제제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율이 높았다.
- ② '최근 6개월간의 보험한약제제 1개월 사용량'은 890명 중 6명을 제외한 884명이 답변하였으며 평균 85.82만원으로 나타났다.
- ③ '현재의 56개 처방 중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한약제제'를 묻는 질문에는 參胡芍藥湯, 當歸連翹飲, 安胎飲, 升陽補胃湯, 清胃散, 白朮湯 등을 답변하였다.<sup>20)</sup>
- ④ '기존연구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시되었거나 전문가회의에서 추천된 처방중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처방 10가지'로는 當歸鬚散, 五苓散, 藿香正氣散, 桂枝茯苓丸, 防風通聖散 등을 상위로 답변하였다.<sup>21)</sup>
- ⑤ '그 외 목록에는 없으나 건강보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처방'으로는 256명이 답변하였는데, 荊防地黃湯, 太陰調胃湯등 사상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처방으로는 麻黃湯, 銀翹散, 牛黃清心元, 十全大補湯, 舒經湯, 酸棗仁湯 등을 상위로 답변하였다.<sup>22)</sup>

#### 5. 기준처방 최종개선안 202처방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에서도 기준처방을 200처방 정도로 선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일본, 중국, 대만의 다빈도 처방과 건강보험 단미엑스산제 다빈도 조합 분석에서도 출된 처방, 그리고 1, 2차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처방과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정한 처방 및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처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중복되는 처방을 제외하고 여기에 현행 56방을 더하면 217처방이 도출되나 설문조사에서 나온 임상활용하위 15처

방(參胡芍藥湯, 安胎飲, 當歸連翹飲, 升陽補胃湯, 白朮湯, 當歸六黃湯, 補虛湯, 芎蘇散, 大黃牡丹皮湯, 大和中飲, 黃芩芍藥湯, 茯苓補心湯, 益胃升陽湯, 清暑益氣湯, 芎夏湯)을 삭제하여 총 202개 처방이 도출되었다. 이 개선안 목록에는 사상처방이 2종만 반영되었으므로 추후 사상체질의학회에서 요구한 사상처방 24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able 2.** 202 Prescriptions Suggested for Improvement of Existing Prescriptions

No.	Prescription name	Medicines not included in NHIS	Reference	No.	Prescription name	Medicines not included in NHIS	Reference
1	Gamigwibitang	Baekboksins, Sanjoin, Wonji, Yongannyuk	Bangyakhap pyeon	2	Gamisachiltang	Namseong, Baekdugu, Billang, Ikjiin	Bangyakhap pyeon
3	Gamisoyosan		Bangyakhap pyeon	4	Gamiondamtang	Gyulhong, Jugyeo	Bangyakhap pyeon
5	Galgeuntang		Bangyakhap pyeon	6	Galgeuntanggac heongungsini	Sini	Japan
7	Galgeunhaegitang		Bangyakhap pyeon	8	Gamgiltang		Bangyakhap pyeon
9	Ganghwalseungseuptang	Gobon	Donguibogam	10	Ganghwaryupungtang	Gugija, Duchung	Bangyakhap pyeon
11	Gaegyeolseogyongtang	Namseong, Oyak	Bangyakhap pyeon	12	Geopungjibodan	Jeongal	Donguibogam
13	Gyeonjeongsan	Baekgangjam, Baekbuja, Jeongal	Bangyakhap pyeon	14	Gyeongokgo	Baengmil	Bangyakhap pyeon
15	Gyejigabujatang	Buja	Uijonggeumgam	16	Gyejigayonggol moryeotang	Moryeo, Yonggol	Uijonggeumgam
17	Gyejibongnyeonghwan		Donguibogam	18	Gyejitang		Bangyakhap pyeon
19	Gongjindan	Nogyong, Sahyang, Sansuyu	Bangyakhap pyeon	20	Gwakyangieonggisang	Daebokpi	Bangyakhap pyeon
21	Gyogamdan	Boksin	Bangyakhap pyeon	22	Gumiganghwalatang		Bangyakhap pyeon
23	Gunggwitang		Bangyakhap pyeon	24	Gwibitang	Baekboksins, Sanjoin, Wonji, Yongannyuk	Bangyakhap pyeon
25	Gwichulpajingtang	Gwangye, Somok, Oyak, Honghwa	Bangyakhap pyeon	26	Gigukjihwanghwan	Gugija, Gukhwa, Sansuyu, Sanyak	Bangjehak (Yeongnimisa)
27	Naesosan		Bangyakhap pyeon	28	Danggwibohyeoltang		Bangyakhap pyeon
29	Danggwisayeokgaosuyusaenggangtang	Osuyu, Tongcho	Uijonggeumgam	30	Danggwisusan	Somok, Oyak, Honghwa	Donguibogam
31	Danggwijagyaksan		Donguibogam	32	Danggwijagyaktang	Billang	Bangyakhap pyeon

33	Daeganghwaltang	Banggi	Donguibogam	34	Daegeumeumja		Bangyakhap pyeon
35	Daebangpungtang	Duchung, Buja, Useul	Bangyakhap pyeon	36	Daesihotang		Bangyakhap pyeon
37	Daeyeongjeon	Gugija, Duchung, Useul	Bangyakhap pyeon	38	Daecheongnyong tang		Bangyakhap pyeon
39	Daechilgitang	Gwangye, Ikjiin	Bangyakhap pyeon	40	Doinseunggitang		Bangyakhap pyeon
41	Dokhwalgisaeng tang	Duchung, Sanggisaeng, Useul, Jingyo	Bangyakhap pyeon	42	Layla	Mogwa, Sokdan, Ogapi, Useul, Wiryeongseon, Honghwa	HangukPMG jeyak (patent)
43	Majainhwan	Majain	Uijonggeumg am	44	Mahaenggamseo ktang		Bangjehak (Yeongnimsa)
45	Mahwangtang		Bangyakhap pyeon	46	Mangeumtang	Duchung, Sokdan, Useul, Jingyo	Bangyakhap pyeon
47	Manhyeongjasan	Moktong	Bangyakhap pyeon	48	Maengmundongt ang	Gaengmi	Bangyakhap pyeon
49	Mokyangsungita ng	Osuyu, Ikjiin, Chodugu	Bangyakhap pyeon	50	Banchongsan	Gwangye, Billang, Jeonghyang, Chongbaek, Hyeonhosaeak	Bangyakhap pyeon
51	Banhageumchul tang	Namseong, Wiryeongseon	Bangyakhap pyeon	52	Banhabaekchul cheonmatang		Bangyakhap pyeon
53	Banhasasintang		Bangyakhap pyeon	54	Banhahubaktang		Donguibogam
55	Baldoksan	Hansuseok	Donguibogam	56	Banggihwanggit ang	Banggi	Donguibogam
57	Bangpungtongse ongsan	Hwalseok	Bangyakhap pyeon	58	Baenongsangeup tang		Japan
59	Baekhotang	Gaengmi	Donguibogam	60	Bomyeongsan	Gobaekban, Maacho, Jusa	Uijonggeumg am
61	Bosaengtang	Gyulpi, Oyak	Bangyakhap pyeon	62	Boyanghwanota ng	Guin, Honghwa	Bangjehak (Yeongnimsa)
63	Boeumikgijeon	Sanyak	Bangyakhap pyeon	64	Bojungikgitang		Bangyakhap pyeon
65	Bojungchiseupta ng	Moktong	Bangyakhap pyeon	66	Bohwahwan	Nabokja	Bangyakhap pyeon
67	Bujaijungtang	Buja	Bangyakhap pyeon	68	Bunsingieum	Daebokpi, Moktong, Billang	Bangyakhap pyeon
69	Bulsusan		Bangyakhap pyeon	70	Bulhwangeumjeo nggisang		Bangyakhap pyeon
71	Binsosan	Mogwa, Billang, Useul, Chongbaek	Bangyakhap pyeon	72	Sagunjatang		Bangyakhap pyeon
73	Saryeongopisan	Daebokpi, Jeoryeong, Jigolpi, Chajeonja	Bangyakhap pyeon	74	Samultang		Bangyakhap pyeon

75	Sayeoksan		Donguibogam	76	Sanjointang	Sanjoin	Donguibogam
77	Samgieum	Gugija, Duchung, Buja, Useul	Bangyakhapyeon	78	Samsoeum		Donguibogam
79	Samsohwan		Donguibogam	80	Samchulgeonbitang		Donguibogam
81	Samhwangsasimtang		Donguibogam	82	Saengmaeksan		Bangyakhapyeon
83	Saenghyeoryunbueum	Honghwa	Bangyakhapyeon	84	Seogyeongtang	Ganghwang, Haedongpi	Bangyakhapyeon
85	Seonghyangjeonggisang	Namseong, Daebokpi	Bangyakhapyeon	86	Sogeonjungtang	Idang	Donguibogam
87	Sogyehongwalhyeoltang	Banggi, Useul, Wiryeongseon, Choryongdam	Manbyeonghoechun	88	Sosongmyeongtang	Gwangye, Banggi, Buja	Bangyakhapyeon
89	Soseunggitang		Bangyakhapyeon	90	Sosihotang		Bangyakhapyeon
91	Sojadodamganggitang	Namseong, Soja	Bangyakhapyeon	92	Socheongnyongtang		Bangyakhapyeon
93	Sochehwan	Oryeongji, Heukchuk	Bangyakhapyeon	94	Sochimhwan	Gobaekban, Jusa, Hwangdan	Bangyakhapyeon
95	Sopungsan	Udamnamseong	Bangyakhapyeon	96	Sopungtang	Oyak	Bangyakhapyeon
97	Sopunghwalhyeoltang	Namseong, Banggi, Wiryeongseon, Honghwa	Bangyakhapyeon	98	Sohaphyangwon	Gajapi, Baekdanhyang, Sahyang, Seogak, Sohamnyu, Ansikhyang, Yongnoe	Bangyakhapyeon
99	Sunghwajungtang		Bangyakhapyeon	100	Seungseuptang	Buja	Bangyakhapyeon
101	Seungyangsanhwatang		Donguibogam	102	Sigyeongbanhatang		Bangyakhapyeon
103	Sihogayonggolmoryeotang	Moryeo, Yeondan, Yonggol	Uijonggeumgam	104	Sihogyejitang		Donguibogam
105	Sihosogantang		Uijonggeumgam	106	Sihocheonggantang		Donguibogam
107	Shinbaro	Ogapi, Useul, Duchung, Gucheok, Heukdu	Nogsibja (patent)	108	Simjeokwan	Dansam, Samchil, Yongnoe	Sam Chun Dang Pharm. Co.,Ltd. (patent)
109	Simmipaedoktang	Aengpi	Japan	110	Sipsintang		Bangyakhapyeon
111	Sibungmiyugieum	Billang, Oyak	Donguibogam	112	Sipjeondaebotang		Bangyakhapyeon
113	Ssanghwatang		Bangyakhapyeon	114	Anjungsan	Moryeo, Hyeonhosaek, Hoehyang, Ryanggang	Taepyeongh yeminhwajegukbang



115	Eokgansangajin pibanha	Jogudeung	Japan	116	Yeosintang	Duchung, Hyeonhosaek	Donguibogam
117	Yeongyopaedoksan		Donguibogam	118	Yeoldahansotang	Gobon, Nabokja	Bangyakhap pyeon
119	Yeonggyechulgamtang		Donguibogam	120	Ryeongsanjetongeum	Wiryeongseon	Bangyakhap pyeon
121	Oryeongsan	Jeoryeong	Bangyakhap pyeon	122	Orimsan		Bangyakhap pyeon
123	Oyaksungisan	Baekgangjam, Oyak	Bangyakhap pyeon	124	Ojeoksan		Bangyakhap pyeon
125	Ongyeongtang	Osuyu, Agyo	Donguibogam	126	Ondamtang	Jugyeo	Bangyakhap pyeon
127	Oncheongeum		Donguibogam	128	Yongdamsagantang	Yongdamcho, Chajeonja	Donguibogam
129	Ugongsan	Hoehyang, Heukchuk	Donguibogam	130	Uhwangcheongsimwon	Geumbak, Daeduhwangwon, Sahyang, Sanyak, Singuk, Agyo, Yeongyanggak, Yongnoe, Seogak, Unghwang, Jusa, Pohwang	Donguibogam
131	Uhwangporyonghwan	Geumbak, Sahyang, Unghwang, Udamnamseong, Jusa, Jinju, Cheonchukhwang, Hobak	Bangyakhap pyeon	132	Wiryeongtang	Gwangye, Jeoryeong	Bangyakhap pyeon
133	Yuhyangsan	Dongnok, Moryak, Baekban, Yuhyang	Donguibogam	134	Yukgunjatang		Bangyakhap pyeon
135	Yungmijihwangtang	Sansuyu, Sanyak	Uijonggeungam	136	Yugultang		Donguibogam
137	Yukwatang	Mogwa, Baekpyeondu, Hyangyu	Bangyakhap pyeon	138	Eungyosan	Damdusi, Ubangja, Jugyeop, Hyeonggaesu	Bangjehak (Yeongnimsa)
139	Euljatang		Japan	140	Igigeopungsan	Namseong, Oyak	Donguibogam
141	Imyosan		Donguibogam	142	Ieumjeon		Bangyakhap pyeon
143	Ijungtang		Bangyakhap pyeon	144	Ijintang		Bangyakhap pyeon
145	Igwonsan	Hwalseok	Bangyakhap pyeon	146	Insamsoyosan		Bangyakhap pyeon
147	Insampaedoksan		Bangyakhap pyeon	148	Injinoryeongsan	Jeoryeong	Bangyakhap pyeon
149	Injinhotang		Bangyakhap pyeon	150	Jageumjeong	Munhap, Sahyang, Sanjago, Soksuja, Hongadaegeuk	Uihagimmun

151	Jayuntang	Hwamain, Billang, Honghwa	Bangyakhap pyeon	152	Jaeumganghwatang		Bangyakhap pyeon
153	Jaeumgeonbitang	Boksin, Wonji	Bangyakhap pyeon	154	Jagyakgamchotang		Bangyakhap pyeon
155	Jeonsaenghwalhyeoltang	Honghwa, Gobon	Bangyakhap pyeon	156	Jogyeongsan	Osuyu, Agyo	Bangyakhap pyeon
157	Jogyeongjiongtang	Gwangye, Sugae, Osuyu, Hyeonhosaek	Bangyakhap pyeon	158	Jodeungsan	Jeongal, Seogak	Donguibogam
159	Jowiseunggitang		Donguibogam	160	Jowiseungcheongtang	Geonyul, Nabokja, Sanjoin, Seokchangpo, Yongannyuk, Wonji, Uiiin	Donguisasangsinyeon
161	Jichulhwan		Bangyakhap pyeon	162	Jinmutang	Buja	Bangyakhap pyeon
163	Cheonwangbosimdan	Dansam, Wonji, Baekboksin, Baekjain, Sanjoin, Seokchangpo, Hyeonsam	Donguibogam	164	Cheongganhaeultang		Donguibogam
165	Cheonggeumganghwatang		Donguibogam	166	Cheongnijagamtang	Sansuyu, Sanyak	Donguibogam
167	Cheongsanggyeontongtang		Bangyakhap pyeon	168	Cheongsangbangpungtang		Bangyakhap pyeon
169	Cheongsangbohahwan	Sansuyu, Sanyak	Bangyakhap pyeon	170	Cheongsimnyeoniaeum	Jigolpi, Chajeonja, Yeonja	Bangyakhap pyeon
171	Cheongyeolsaseuptang	Mogwa, Moktong, Banggi, Billang	Bangyakhap pyeon	172	Cheongwisan		Bangyakhap pyeon
173	Cheonghwaboemtang	Cheonhwabun, Hyeonsam	Bangyakhap pyeon	174	Chisitang	Dusi	Bangyakhap pyeon
175	Tangnisodogeum		Donguibogam	176	Taehwahwan	Baekdugu, Byeonhyangbu, Yongannyuk	Bangyakhap pyeon
177	Tonggyeongtang	Gwangye, Somok, Omae, Honghwa	Bangyakhap pyeon	178	Tonggwansan	Buja, Jagamcho	Susebowon
179	Tongsunsan	Moktong, Oyak, Hasuo, Hoehyang	Bangyakhap pyeon	180	Tongyutang	Jeoje, Cheonsangap, Tongcho	Bangyakhap pyeon
181	Tongyutang	Honghwa	Bangyakhap pyeon	182	Palmultang		Bangyakhap pyeon
183	Palmiwon	Buja, Sansuyu, Sanyak, Jeongal	Seuideukhyobang	184	Paljeongsan	Gumaek, Moktong, Chajeonja, Pyeonchuk, Hwalseok	Donguibogam

185	Pyeongwisan		Bangyakhap pyeon	186	Piryongbanggam giltang		Donguibogam
187	Haepyoijintang	Gyulpi, Jawan	Bangyakhap pyeon	188	Haenggihyangso san	Oyak	Bangyakhap pyeon
189	Haengsotang		Bangyakhap pyeon	190	Hyangsayangwit ang	Baekdugu	Donguibogam
191	Hyangsayukgunj atang	Sanyak	Bangyakhap pyeon	192	Hyangsapyeong wisan		Bangyakhap pyeon
193	Hyangsosan		Bangyakhap pyeon	194	Hyangyusan	Baekpyeongdu, Hyangyu	Bangyakhap pyeon
195	Hyeolbuchugeot ang	Useul, Honghwa	Donguibogam	196	Hyeonggaeyeong yotang		Bangyakhap pyeon
197	Hyeongbangpae doksan		Donguibogam	198	Hwanggigyejitang		Donguibogam
199	Hwangnyeonhae doktang		Bangyakhap pyeon	200	Hoesusan	Mogwa, Baekgangjam, Oyak	Bangyakhap pyeon
201	Hwachullyanggy eoksan		Bangyakhap pyeon	202	Hubagonjungtang	Chodugu	Bangyakhap pyeon

Japan: Based on the approval criteria for general herbal medicine in Japan  
 Shaded Prescriptions are in Given 56 NHI Standard Prescriptions

### 6. 2015년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

한약진흥재단과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2015년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로 56개 기준 처방 중 활용도 및 저사용 빈도 처방의 요양급여 목록 삭제안과 보장성 강화 및 높은 활용도 처방의 요양급여 목록 추가안을 제시했다. 삭제안은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연

구, 제조업체 설문(선행연구), 한의사 선호도 설문(선행연구), 임상연구 근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7종 및 순위를 발표했다. 추가안은 한의사 요구처방 133종 우선순위별 요양급여 목록 추가안을 도출했다. 추가안은 한의사 선호 질환군, 진료비 통계, 임상연구 근거, 추가 단미수, 생산실적 순위 등을 적용하여 1, 2, 3순위 군을 구분했고, 그 중 1순위군은 17종의 순위도 제안하였다.

**Table 3.** The Priorities Group of Improvement Prescriptions

Ranking	Prescription for Removal	Additional Prescription		
		1st Rank Group	2nd Rank Group	3 Rank Group
1	Gungsosan	Gyejibongnyeonghwan	Ondamtang, Cheongsimnyeoniaeum, Jodeungsan, Oyaksungisan, Ganghwaryupungtang, Bunsingieum, Uhwangporyeonghwan, Jagyakgamchotang, Ssanghwatang, Gyejitang, Mahwangtang,	Gamisachiltang, Gamgiltang, Gaegyeolseogyongtang, Gyeonjeongsan, Gyogamdan, Gunggwitang, Gwibitang, Gwichulpajingtang, Danggwibohyeoltang, Danggwijagyaktang, Daeganghwaltang, Daebangpungtang, Daechilgitang, Dokhwalgisaengtang, Mangeumtang, Mokyangsungitang, Banchongsan, Banhageumchultang, Baldoksan,
2	Seungyangb owitang	Gamiondam tang		
3	Danggwiyeyo ngyoeum	Sanjointang		
4	Igwiseungya ngtang	Ongyeongta ng		

5	Baekchultang	Gamigwibitang	Gwakyangjeonggisang, Baekhotang,	Bomyeongsan, Bosaengtang, Bojungchiseuptang, Bujaijungtang, Bulsusan, Binsosan, Samsohan, Saenghyeoryunbueum, Sosongmyeongtang, Sojadodamganggitang, Sochimhwan, Sopungtang, Sopunghwalhyeoltang, Sohaphyangwon, Sungihwajungtang, Seungseuptang,
6	Samhojagyaktang	Ryeongseonjetongseum	Cheonghwaboeumtang, Uhwangcheongsimwon, Sayeoksan,	
7	Cheongseoikgitang	Cheongsangbangpungtang	Sagunjatang, Daegumeumja, Soseunggitang,	
8	Antaeum	Bangpungtongseongsan	Wiryeongtang, Sogeonjungtang,	
9	Daehwangmokdanpitang	Yungmijihwangtang	Majainhwan, Jinmutang,	
10	Danggwiyukhwangtang	Yongdamsagantang	Bohwahwan, Hyangsayukgunjatang, Sochehwan,	
11	Hwanggeumjagyaktang	Tangnisodogeum	Taehwahwan, Anjungsan,	
12	Orimsan	Hyeongbangaedoksan	Jogyongjongoktang, Sipjeondaebotang,	
13	Bongnyeongbosimtang	Geopungjibodan	Samultang, Gyeongokgo, Gongjindan,	
14	Boheotang	Hyangsosan	Cheonwangbosimdan, Danggwisan, Sogyonghwalhyeoltang, Palmiwon, Injinyeongsan	
15	Daechongnyongtang	Maengmundongtang		
16	Cheongwisan	Yukgunjatang		
17	Injinhotang	Oryeongsan		

#### IV. 고찰

1996년 처음으로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태동하여 한국한의학회연구소의 『한방 의료 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제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조사』 결과 105개 처방이 제시되었다. 이중 실제 한의사들의 요구도가 높은 처방 16개를 2003년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에서 국립의료원이 제시한 처방 51개중 사상처방 23개, 기존급여대상 1개를 제외한 27개 처방 중 순위가 높은 21개와 비교해보았을 때 귀비탕, 쌍화탕, 기응환, 온담탕, 팔미원, 분심기음, 열다한소탕, 양격산화탕, 정로환, 갈근해기탕이 1996년과 비교하여 2003년에 새롭게 추가되길 원하는 처방임을 알 수 있으며 시대변천에 따른 한의사의 추가처방의 구

성이 새롭게 바뀌고 있었다.

2009년에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원 처방 선호도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사상체질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에서 필수적으로 다용되는 기준처방을 파악하여 그중 방제학회 의견을 받아 10개 기준처방은 제외하고 총 106개 기준처방 급여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추가 급여 확대가 필요한 약제구성안이 제시되었는데 상기 필수 기준처방 106종의 원전 및 구성 약제를 조사한 후, 현행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69종을 제외하고, 추가 급여 확대가 필요한 단미제 131종을 건의하였다.

2013년 대한한의협회의 비급여 실손보험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56처방 외 추가처방 10개 순위를 살펴보면 단미 69종에 포함 안 되는 약제들이 있어 추가처방에 넣지 못하게 된다. 처방들을 살펴

자면 1순위 당귀수산(소목, 오약, 홍화), 2순위 곽향 정기산(대복피), 3순위 오령산(저령), 4순위 육미지황탕(산수유, 산약), 5순위 작약감초탕, 6순위 계지탕, 7순위 쌍화탕, 8순위 맥문동탕(갱미), 9순위 귀비탕(백복신, 산조인, 용안육, 원지), 10순위 계지복령환이다.

가장 원하는 추가처방 10개 중 6개의 처방은 구성 한약제가 단미 69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처방인 당귀수산, 곽향정기산, 오령산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실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처방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990년 이후 급여범위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온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내 보험급여 품목수는 인접한 중국, 일본, 대만 등 국가의 보험적용 품목 수(일본 : 148종 복합제와

243종 단미제, 중국 : 987종 복합제, 대만 307종 복합제와 500여종 단미제)와 비교하였을 경우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외국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효능분류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국내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보익제와 활혈거어제, 안과, 부인과 질환 등 한정적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여 제제 사용범위가 협소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국수준에 걸맞게 보험적용 한약제제 품목수를 시급히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타당성에 있어 한의사의 한약제제 수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 202처방을 제시하였다.

이 202처방이 보험급여가 되려면 건강보험 단미엑스제에 추가해야 할 단미제 총수는 127개이고 202처방에 사용되는 약재 빈도수로 보았을 때 오약(11번), 홍화, 우슬(10번), 빈랑, 부자(9번), 산약, 두충(8번) 등이 우선적으로 추가해야할 단미엑스제이다.

**Table 4.** The Priorities of 127 Single Extracts to be Added for 202 Prescriptions

Ran king	Single Extracts Need to be Added for 202 Prescriptions	Frequency
1	Oyak	11
2	Honghwa, Useul	10
3	Billang, Buja	9
4	Sanyak, Duchung	8
5	Namseong, Gwangye	7
6	Sahyang, Sansuyu, Banggi, Moktong	6
7	Boksin, Sanjoin, Osuyu	5
8	Yongannyuk, Gugija, Jeongal, Baekgangjam, Daebokpi, Mogwa, Wiryeongseon, Hyeonhosaek, Jusa, Jeoryeong, Chajeonja	4
9	Baekdugu, Ikjiin, Gobon, Moryeo, Somok, Hwalseok, Nabokja, Seogak, Yongnoe, Hoehyang, Agyo	3
10	Jugyeo, Yonggol, Tongcho, Jingyo, Ogapi, Sokdan, Uiiin, Gaengmi, Chodugu, Chongbaek, Gobaekban, Gyulpi, Jigolpi, Heukchuk, Udamnamseong, Dansam, Geumbak, Singuk, Unghwang, Omae, Seokchangpo, Hyeonsam	2
11	Gyulhong, Sini, Baekbuja, Baengmil, Nogyong, Gukhwa, Sanggisaeng, Majain, Jeonghyangpi, Hansuseok, Maacho, Guin, Ganghwang, Haedongpi, Choryongdam, Soja, Oryeongji, Hwangdan, Gajapi, Baekdanhyang, Yuhyang, Sohamnyu, Ansikhyang, Yeondan, Gucheok, Heukdu, Samchil, Aengpi, Ryanggang, Jogudeung, Gyesim, Yongdamcho, Daeduhwanggwon, Yeongyenggak, Pohwang, Jinju, Cheonchukhwang, Hobak, Dongnok, Moryak, Baekban, Sangsan, Chogwa, Damdusi, Ubangja, Jugyeop, Hyeonggaesu, Munhap, Sanjago, Soksuja, Hongadaegek, Main, Sugae, Geonyul, Baekjain, Yeonja, Cheonhwabun, Dusi, Byeonhyangbu, Hasuo, Jeoje, Cheonsangap, Gumaek, Pyeonchuk, Jawan, Baekpyeoudu, Hyangyu	1

202처방 중에 단미엑스제 추가가 필요없는 처방은 감길탕, 마황감석탕, 마황탕, 소승기탕, 육군자탕, 향소산 등이 있다. 이 처방들은 바로 56처방에 추가할 수 있는 처방이라 1순위로 고려해볼 수 있는 처방이

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준처방 개선안을 202방, 106방 두 가지로 제안하였으나 사상처방은 2종만

포함시켰다. 사상체질의학을 활용하며 사상처방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많지 않으나 설문조사에서 사상처방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점과 한국한의학의 독창성을 고려한다면 한약제제 개선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에는 다양성을 위해 사상체질의학회에서 요구한 사상처방 24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들의 수요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현 청구경향을 분석하여 한방 다빈도 상병 및 임의처방 행태를 분석하여 기준처방에 추가해야 할 처방목록을 작성하고 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을 2가지로 제시하여 1990년 이후 급여범위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온 보험급여 한약제제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 제안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한약제제 사용비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제료현실화, 제제품질 모니터링 강화로 약효신뢰도 향상, 제형다양화,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결론

의약분업 이후 한약제제의 사용량이 급격히 저하된 현 상황에서 한약제제의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신뢰하고 쓸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하여 소비자인 한의사들의 수요와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다빈도 처방들 중에서 임상에 많이 활용되며, 기본방에 가깝고, 품질관리가 용이한 처방들을 주로 선정하여 표준화 노력을 하고 품질 좋은 전문의약품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급여 등재되도록 하고자 한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 혼합 단미 엑스산제 및 단미 산제 품목은 해외 사례에 견주어보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약품분야에서의 대대적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제안된 202개 처방으로 기준처방을 확대하고 필요한 단미엑스제를 추가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방처방의 경우 다양한 본초들을 조합하여 투약하므로 단미 품목의 조정으로 추가 단미 품목에 비해 훨씬 다양한 처방 조성이 가능하게 되므로, 의학적 활용 측면에서 단미 품목 추가는 보험보장 치료를 크

게 확대시킬 수 있다.

차후 현행 단미 엑스산제는 최소 일본과 대만의 급여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처방은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주상병과 다빈도 순으로 확대하고, 한국한의학의 독창적 분야인 사상의학 처방도 포함되어야 한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용역과제인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References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utline. Available from:URL: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110
2.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2
3. Park Jae-min, Shin Byung-chul, Heo Gwang-ho, Lee byung-wook. The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indications of herbal medicine through analysis about insured herbal extracts and clinical prescriptions. 2013;17(2): 129-138
4.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5 Available from:URL:http://www.i-sbm.org/?1A6d6J
5.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2-21
6.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6 herbal medicine salary list & maximum amount of money chart. Available from:URL: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221&nttId=374307
7. Yearbook publication committee, 2015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016:255
8.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1

9. Byung–Mook Lim, Tasks for Insuring the Composite Herbal Preparation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1:1–7
10.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2015 Statistics index of medical expenses. Available from:URL: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45010000&cmsurl=/cms/medi\\_info/07/03/01/1344860\\_27398.html&subject=2015%eb%85%84+%ec%a7%84%eb%a3%8c%eb%b9%84+%ed%86%b5%ea%b3%84%ec%a7%80%ed%91%9c#none](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45010000&cmsurl=/cms/medi_info/07/03/01/1344860_27398.html&subject=2015%eb%85%84+%ec%a7%84%eb%a3%8c%eb%b9%84+%ed%86%b5%ea%b3%84%ec%a7%80%ed%91%9c#none)
1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48
12.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40
13. Yo–Han Park, Dae–sun Hwang, Hyun Kyu Shin. Research for be Furnished Herbal Medicine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by Medical Institution of Chinese Medicine, Korean Medicine Korean Prescription Academic Journal. 2010;18(1): 43–56
14.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43
15.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38
16.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Basic Drug List Management Law. Available from:URL: [http://big5.gov.cn/gate/big5/www.gov.cn/gzdt/2009-08/18/content\\_1395426.htm](http://big5.gov.cn/gate/big5/www.gov.cn/gzdt/2009-08/18/content_1395426.htm)
17.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47
18.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48
19.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54
20.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54–155
2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56
22.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Standard Prescription of Reasonable Improvement Plan. 2014:157

## 2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광대학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행 56개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현황과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약제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조사입니다.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 12.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우. 570-749)  
 담당자 : 김윤경 (hestia@wku.ac.kr)  
 ☎: (063)850-6803 FAX: (063)850-7309

■ 응답자 일반사항 ( 응답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

연령	① 20 대	② 30 대	③ 40 대	④ 50 대	⑤ 60 대	⑥ 70 대 이상	
근무형태	① 한의원	② 요양병원	③ 한방병원	④ 보건소	⑤ 대학 또는 연구기관	⑥ 기타( )	
근무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도	⑫ 경상도	⑬ 전라도	⑭ 제주특별자치도

1. 보험한약제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최근 6개월간 본인의 보험한약제제 1달 사용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3. 현재 56개 처방의 2010~2013년 사용량에 따른 처방순위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한약제제를 10가지 적어주십시오.

순위	방제명	총투여일	순위	방제명	총투여일	순위	방제명	총투여일
1	五積散	239,639,558	21	滋陰降火湯	7,825,035	41	大青龍湯	733,730
2	香砂平胃散	59,439,208	22	葛根解肌湯	5,654,970	42	三黃瀉心湯	649,427
3	平胃散	52,952,396	23	生脈散	5,645,274	43	黃芩芍藥湯	542,507
4	九味羌活湯	50,935,475	24	黃連解毒湯	5,235,647	44	補虛湯	478,799
5	二陳湯	46,422,144	25	八物湯	4,871,733	45	清暑益氣湯	447,632
6	小青龍湯	46,029,723	26	參朮健脾湯	4,646,724	46	柴胡清肝湯	437,966
7	麥蘇飲	42,003,958	27	桃仁承氣湯	4,325,629	47	大黃牡丹皮湯	369,217
8	補中益氣湯	40,633,008	28	理中湯	4,241,651	48	當歸六黃湯	283,515
9	芎夏湯	36,810,432	29	杏蘇湯(散)	2,466,730	49	茵陳蒿湯	179,156
10	葛根湯	25,025,666	30	半夏厚朴湯	2,229,726	50	參胡芍藥湯	132,382
11	蓮翹敗毒散	19,407,207	31	柴胡桂枝湯	2,162,787	51	芎蘇散	86,783
12	半夏白朮天麻湯	19,238,483	32	大和中飲	2,047,415	52	升陽補胃湯	82,249
13	加味逍遙散	18,664,026	33	調胃承氣湯	1,972,285	53	白朮湯	75,091
14	人參敗毒散	16,872,241	34	大柴胡湯	1,394,181	54	清胃散	61,966
15	內消散	13,353,425	35	回春涼膈散	1,056,819	55	當歸連翹飲	34,361
16	半夏瀉心湯	13,023,084	36	柴梗半夏湯	1,045,147	56	安胎飲	9,492
17	荊芥連翹湯	12,504,050	37	柴胡疏肝湯	962,235			
18	不換金正氣散	9,917,409	38	五淋散	930,909			
19	清上蠲痛湯	8,985,975	39	益胃升陽湯	864,426			
20	小柴胡湯	8,893,221	40	茯苓補心湯	768,038			

4. 다음은 기존연구에서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거나 전문가회의에서 추천된 처방 리스트입니다. 이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처방을 10가지 적어주십시오.

연번	처방명	연번	처방명	연번	처방명	연번	처방명	연번	처방명
1	葛根湯加川芎辛夷	13	大防風湯	25	四逆散	37	烏藥順氣散	49	眞武湯
2	羌活勝濕湯	14	獨活寄生湯	26	小建中湯	38	溫經湯	50	天王補心丹
3	桂枝加龍骨牡蠣湯	15	麻杏甘石湯	27	消風散	39	溫膽湯	51	清上補下湯
4	桂枝茯苓丸	16	麥門冬湯	28	疎風活血湯	40	溫清飲	52	清心蓮子飲
5	桂枝湯	17	防己黃芪湯	29	柴胡加龍骨牡蠣湯	41	龍膽瀉肝湯	53	托裡消毒飲
6	藿香正氣散	18	防風通聖散	30	心適丸	42	六君子湯	54	八味元
7	歸脾湯	19	排膿散及湯	31	十味敗毒散	43	六味地黃湯	55	香蘇散
8	杞菊地黃丸	20	白虎湯	32	十神湯	44	乙字湯	56	解表二陳湯
9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	21	分心氣飲	33	雙和湯	45	理氣祛風散	57	熱多寒少湯
10	當歸鬚散	22	檳蘇散	34	抑肝散	46	滋陰健脾湯	58	調胃升清湯
11	當歸飲子	23	四君子湯	35	苓桂朮甘湯	47	芍藥甘草湯	59	신바로
12	當歸芍藥散	24	四物湯	36	五苓散	48	釣藤散	60	레일라

5. 그 외 본인이 목록에는 없으나 건강보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처방(출전포함)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